

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공모주&지배구조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1) 종류형 C-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2)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
- 3)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7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금융 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PE : BU033
제3조 (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0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 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0. 종류 C-PE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C-P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15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-----	-------	-------

투자위험등급	(생략)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	(생략)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</u> 을 감안하여 <u>5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보수 (생략) ※ 주석사항 종류C-F, W, S, I, C-P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보수 (업데이트) ※ 주석사항 종류C-F, W, S, I, C-P, <u>C-PE</u> 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[1]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생략) 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 (생략)	[1]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 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. 위험등급 -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(공모주 등)에 30%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'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'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. 위험등급 - 이 투자신탁은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9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1. 과세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	1. 과세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<u>C-PE</u> 수익증권 가입자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	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종류 C-PE 신설>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ackground-color: #008000; color: white;">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ackground-color: #008000; color: white;">펀드코드</td> </tr> </table>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코드
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	펀드코드			

		C-PE	BU033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종류 C-PE 신설>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
		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명 명칭)	펀드코드
		C-PE	BU033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4일 - 종류명 C-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업데이트)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명 구조 <종류 C-PE 신설>	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명 구조	
		종류별	가입자격
		C-PE	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(공모주 등)에 30%이하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'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'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위험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연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9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

	<p>있습니다.</p> <p>주)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'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 <p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] <별첨 참조></p>	<p><u>주1)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] <별첨 참조></p>							
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종류 C-PE 신설></p>	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4 896 1382 1339"> <thead> <tr> <th>종류별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C-PE</td> <td>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별	가입자격	C-PE	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			
종류별	가입자격								
C-PE	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								
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종류 C-PE 신설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<종류 C-PE 신설></p>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종류 C-PE 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업데이트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4 1774 1366 1964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>지급비율</th> </tr> <tr> <th>종류 C-PE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 <td><u>0.300%</u></td> </tr> <tr> <td>판매회사보수</td> <td><u>0.400%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비율	종류 C-PE	집합투자업자보수	<u>0.300%</u>	판매회사보수	<u>0.400%</u>
구분	지급비율								
	종류 C-PE								
집합투자업자보수	<u>0.300%</u>								
판매회사보수	<u>0.400%</u>								

	<p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<종류 C-PE 신설>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6 197 1369 497"> 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0%</td></tr> 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15%</td></tr> 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745%</td></tr> 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 <tr><td>총보수 및 비용</td><td>0.745%</td></tr> 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 </table> <p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6 645 1369 786"> <thead> 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종류 C-PE</td><td>76</td><td>241</td><td>422</td><td>96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신탁업자보수	0.030%	일반사무관리보수	0.015%	보수합계	0.745%	기타비용	실비	총보수 및 비용	0.745%	증권거래비용	실비	구분	1년후	3년후	5년후	10년후	종류 C-PE	76	241	422	960
신탁업자보수	0.030%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사무관리보수	0.015%																							
보수합계	0.745%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비용	실비																							
총보수 및 비용	0.745%																							
증권거래비용	실비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1년후	3년후	5년후	10년후																				
종류 C-PE	76	241	422	960																				
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</p>	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<p>(생략)</p>	<p>(업데이트)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	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</p>	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</p>	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<u>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u>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</p>																						

		<p><u>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</u></p> <p><u>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u></p> <p>(순차적 연번 변경)</p>
--	--	--

<별첨>

[변경 전]

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]

위험등급	분류기준	상세설명
1등급	매우높은 위험	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등급	높은위험	①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등급	다소높은 위험	①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등급	보통위험	①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등급	낮은위험	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등급	매우낮은 위험	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(MMF)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- 1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2)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3)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4)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5)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,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 등급을 조정합니다.
- 6) 모자형펀드의 경우,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

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
- 7)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(Fund of Funds) 형태의 펀드의 경우,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- 8) 최대손실률이라 함은,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,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 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. 다만,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,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,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9)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.

[변경 후]

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6 등급
	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표준편차	25% 초과	25% 이하	15% 이하	10% 이하	5% 이하	0.5% 이하

주1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